

美國 審査制度의 由來

出願된 發明創案에 대하여 最初로 審査主義를 채택한 나라는 美國이다. 미국은 1907년에 特許法을 제정했으며 미국이 憲法을 제정한 1787년보다 3년 뒤의 일이다.

심사할 때 審査官들은 몇권의 참고서와 핸드북을 資料로 하여 發明의 新規性을 조사하고 있었다.

그들의 심사가 얼마나 緻密했고 어려웠는지 그로부터 3년 동안에 許與된 특허의 총수는 겨우 60건에 지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1793년에 법으로서 特許制度의 審査方式을 폐지하였다.

그후 1830년에 美國會에서는 發明特許의 目錄提出을 行政府에 요구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하여 발명 특허의 技術內容에 따른 分類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特許廳은 이에 자극되어 特許明細書를 印刷하여 공개하게 되었으며 그 해가 1871년이였다.

현재의 特許廳閱覽室에서는 1836년부터의 특허를 조사할 수가 있다.

미국의 특허명세서에는 發明者나 出願番號 등 각항의 머리에 []의 표시와 그 속에 固有數字가 반듯이 기입되어 있는데 이는 ICIRE PAT의 결정에 의거한 것이다.

그 주요한 項別 수자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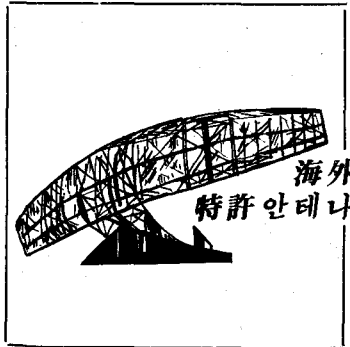
- [11] 特許番號
- [21] 出願番號
- [22] 出願日
- [31] 優先權主張의 出願番號
- [32] 優先權主張의 出願日
- [33] 優先權主張의 原出願國
- [45] 特許證 發行日
- [51] 國際特許分類
- [52] 美國特許分類
- [54] 發明의 名稱
- [56] 引用文獻

日本の 工業所有權紛爭 處理 機構

日本の 發明協會는 工業所有權問題處理委員會를 두어 特許나 商標 등의 工權所有權紛爭을 居中調整하고 있다.

이 委員會에서 작년도 상반기(1~6月)에 접수한 총수는 135건에 이르렀으며 그 가운데에 技術範圍調査가 53건이다.

權利別로는 實用新案이 68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特許 55건, 意匠 12건, 商標 6건의 順序로서 특허와 실용신안이 전체의 87%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公業소유권의 斡旋業務는 9건이 접수되었는데 모두



가 權利侵害事件들이다.

相談業務는 권리의 침해, 분쟁의 事前豫防 등의 상담이 많고 다음이 實施契約에 관한 것들이다.

기술범위 조사는 개발한 製品이 남의 권리를 침해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公業소유권에 관한 情報가 늘어남에 따라 製品販買에 신중한 자세의 反映이라고 할 수 있다(日本特許協會刊行 特許管理에서).

蘇聯의 特許管理會議機能

蘇聯의 特許局에 예속되어 있는 管理會議(Control Council)는 1973년에 설치되었으나 그동안 구체적인 機能을 規制하는 施行規則을 만들지 않고 있어 무수한 事件이 同會

議에 繫留 중에 있다.

同會議의 기능은 審査官이 出願을 拒絕하기로 判斷한 사건이 自動的으로 處理決定하게 된다.

또한 出願人은 심사관의 納得할 수 없는 처사를 同會議에 附議를 요구할 수 있다.

南아프리카의 特許權侵害處理

南아프리카의 特許侵害訴訟에서 被告人은 當該特許의 無效를 주장했다. 그 이유를 登錄官은 受理後에 登錄前의 明細書補正을 허가하고 그 補正은 수리시의 명세서의 請求範圍밖 에 있는 特許範圍를 추가한 것이라는 것이다.

特許法院은 등록관 쪽에 故意的, 詐欺的 違法行爲가 없는 한 등록관의 補正許可決定은 유효한 것이라고 판결하였다.

南아에도 補正申請에 대한 異議申請 및 그 이의 결정에 대한 審判請求規定은 있으나 이의신청시에 얻는 근거에 의해서만 특허를 취소할 수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특허출원 중에 중대한 不眞實表示가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容認 후의 명세서 보정신청은 특허출원의 일부가 형성되지 않음으로써 補正을 주장하는 명세서의 보정신청 중의 不眞實表示라는 근거만으로 특허 취소를 청구할 수가 있다.

EPC의 活動開始

EEC(歐州共同體)加盟國들은 유럽特許條約(EPC)에의 加入節次를 준비하고 있다. 대부분의 이들 EEC 諸國은 1976年末까지에는 EPC나 CPC 가입을 목표로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금년말까지 CPC에의 가입절차가 끝나지 않는 나라들도 1977년 중에 유럽 特許局이 開局되도록 EPC만의 가입절차는 끝내기로 合意되어 있다.